

# 한국성서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정 : 2009. 02. 10.  
 개정 : 2015. 02. 06.  
 개정 : 2018. 01. 16.  
 개정 : 2018. 01. 30.  
 개정 : 2018. 02. 26.  
 개정 : 2020. 11. 06.  
 개정 : 2021. 10. 01.

담당 : 대학평의원회(950-5424)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구성 및 자격)	제4조(추천 및 위촉)
제5조(임원)	제6조(임기)	제7조(평의원의 사임 등)	제8조(회의)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1조(비밀유지)	제12조(예산)
제13조(간사)	제14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15조(개방이사 추천 위원 자격)	제16조(규정 개정)
제17조(내규)	제18조(준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정관 제35조 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정관 제24조의6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15.02.06)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8.01.30)(개정21.10.01)

1. 교원 - 4명
2. 직원 - 3명
3. 조교 - 1명
4. 학생 - 2명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제4조(추천 및 위촉)** ①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15.02.06)

②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15.02.06)

③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 중에서 조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21.10.01)

**제5조(임원)**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평의원의 사임 등)** ①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 구성단위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되, 선출 방식은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궐위 평의원의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사 정족수에 지장이 없는 한 보선하지 아니한다.

##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③ 평의회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의원에게 통지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개정18.02.26)(개정20.11.06)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평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15.02.06)(개정18.01.16)  
 ③ 평의회 의장은 회의 종결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평의회 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18.01.16)(개정20.11.06)

**제11조(비밀유지)** 평의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예산)** 총장은 평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평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18.01.16)  
 ② 간사는 평의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4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개정18.01.16)

**제14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평의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18.01.16)  
 ② 의장은 법인정관 제24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의 추천 위원을 의뢰받은 때에는 추천위원회 위원의 3인을 추천하도록 한다.

**제15조(개방이사 추천 위원 자격)** 개방이사 추천 위원은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16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7조(내규)** 평의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